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19호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상 기후 변화와 각종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나. “풍수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다. “풍수해” 정의 규정의 신설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마. 조 제목을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으로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함
(안 제5조)

바.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1
----------	-----

발의연월일 : 2023. 10. 13.

발 의 의 원 : 권성현 · 강창석 · 구점득 · 김경수 · 김우진
문순규 · 박선애 · 박해정 · 서영권 · 이정희
홍용채 · 황점복 의원(12명)

찬 성 의 원 : 손태화 · 정길상 의원(2명)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상 기후 변화와 각종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나. “풍수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다. “풍수해” 정의 규정의 신설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마. 조 제목을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으로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바.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수해”를 “풍수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해”를 “풍수해”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침수방지장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2. 소규모상가

③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2. (생 략)</p>	<p>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 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풍수해----- -----. 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창원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창원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시민의 책무) ① ----- ----- 풍수해 ----- ----- -----.</p>
<p>② (생 략) <신 설></p>	<p>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지원계획 수립·시행) ①</p>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장치를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침수방지장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2. 소규모상가
- ③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

제6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90퍼센트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준용) 침수방지장치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 ----- 제5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장치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창원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창원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창원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장치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장치를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90퍼센트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 원 이하

제7조(설치규격)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침수방지장치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